

2023년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요양보호사) 1차 채용 공고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요양보호사)」 1차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구분	채용직위	채용인원	고용형태	근무지
서귀포시 종합재가센터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요양보호사)	3명	시급제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 및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대상자의 자택 등

나. 담당업무

직무내용

- 재가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등
- 긴급돌봄지원사업의 돌봄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돌봄공백 및 질병, 사고 등 기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경우(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응시자격 및 가점기준

가. 응시자격

응 시 자 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인 자○ 거주지 :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성별제한 :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용예정일로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임용예정일: '23. 3. 10.)○ 인사청탁 등 채용관련 부정행위로 공공기관채용이 취소된 적이 없는 자○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결격사유</th><th>비고</th></tr></thead><tbody><tr><td rowspan="4">종합재가센터</td><td>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td><td>[참고1]</td></tr><tr><td>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td><td></td></tr><tr><td>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td><td></td></tr><tr><td>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td><td></td></tr></tbody></table>					구분	결격사유	비고	종합재가센터	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참고1]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구분	결격사유	비고														
종합재가센터	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참고1]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조항에 위배되는 자는 임용이 확정된 후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필수)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우대사항 : 장기요양 관련 사업기관 1년 이상 근무자(동점자 우선 합격)																
※ 재가장기요양기관 경력인정기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노인요양시설 사업 2. 「노인복지법」 제28조제1항제1호(방문요양), 2호(주야간보호), 3호(단기보호), 4호(방문목욕), 5호(그 밖의 서비스 중 방문간호) 및 노인요양시설 사업																

나. 가점기준(우대사항)

구 분	대 상	우대 요건	가점	증빙서류
취업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면접 각 항목 40% 이상	법령에 따라 만점의 5% 또는	공고일 이후 국가보훈 처장이 발행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특점 시	10%	증명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자 		면접 총점 5%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②) 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③)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법률의 적용기준을 따름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됨(중복 적용 불가) 사회적취업 취약계층의 경우, 면접시험 동점자 발생 시 ①→③ 순으로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산점은 중복 인정되나 최대 10점까지 적용되며,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최종 합산(단, 인성검사는 제외임) 				

[참고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관리 규정 제8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서 규정한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 ·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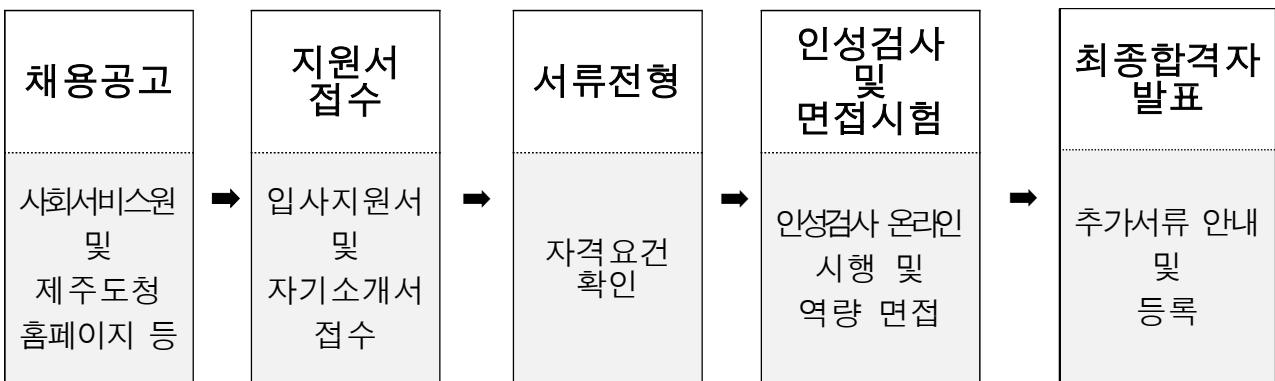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자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동합지원센터
 7.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보수 및 근무조건

급여체계	보수기준	비고
시급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기준(시급 11,075원)	기타 각 사업별 급여지급 기준 적용

4. 시험방법



※ 전(前) 단계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단계의 응시자격 부여

5. 시험세부내용

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1) 채용공고

- 공고기간: '23. 2. 10.(금) ~ 2. 24.(금) 18:00
- 공고장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

2)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3. 2. 10.(금) ~ 2. 24.(금) 18:00
- 접수방법: 방문 및 전자우편
 - 방문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05, 3층
 - 전자우편: sgpcare@jeju.pass.or.kr

- 응시직위: 요양보호사(※결원 및 충원 필요시 추가 채용예정)
 - 체출된 서류는 지원자격 적격여부 및 서류심사를 위해 사용
 - 채용형식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
- 제출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등
- 기타사항: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월~금 09:00~18:00)에만 가능함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 문의전화: 064-762-8555(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

나. 서류전형

1) 일자/장소 및 시험위원

- 서류전형일정: '23. 2. 27.(월)
- 장 소: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 2층 교육장
- 시험위원: 2명(내부 또는 외부위원)

2) 심사방법

-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응시자격 적격여부 결정
※ 응시자격 부적격, 제출서류 미비자를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인성·면접시험 기회 부여

3) 합격자 결정

평가항목	합격자 결정 기준	비고
· 응시자격 적격/부적격 여부	· 채용분야 응시자격이 “적격” 인 자	

4) 서류전형 합격자 및 인성검사 대상자 통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3. 2. 28.(화)
- 통지방법: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다. 인성검사

1) 일자 및 장소

- 일자: '23. 3. 3.(금) ※시간추후 통보
- 장소: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05, 2층 교육장)

2) 대상 및 출제방법

-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출제방법 : 온라인 인성검사 문제지(분석결과로 시험결과 확인)
- 전형방법 : 응시자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검사진행
※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2G폰 사용불가)
 - 20분간 객관식 150문항 실시

3) 합격자 결정

- 응시자 전원 면접시험 대상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라. 면접시험

1) 일자/장소 및 시험위원

- 일시: '23. 3. 3.(금) ※시간추후 통보
- 장소: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05, 2층 교육장)
- 면접위원: 3명(내·외부위원)

2) 심사방법

면접 평정요소	배점
<p>① 공적 책무성,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성 부합여부 (20점)</p> <p>② 이해력 및 지식수준 (20점)</p> <p>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p> <p>④ 인성 및 직업관(20점)</p> <p>⑤ 창의성 및 전문성 (20점)</p>	100점

6. 채용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3. 2. 10. (금) ~ 2. 24. (금)	제주사회서비스원 및 제주도청, 유관기관 등 홈페이지 공고
지원서접수	'23. 2. 10. (금) ~ 2. 24. (금)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3. 2. 28. (화)	제주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안내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실시	'23. 3. 3. (금)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23. 3. 7. (화)	

※ 상기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임

7.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3. 2. 10.(금) ~ '23. 2. 24.(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접수(sgpcare@jeju.pass.or.kr)
(※ 방문접수는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05(동홍동793-5)
- 문의전화 : 064-762-8555(직원채용 담당자)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필수 사항	응시원서	[별지1]서식에 의거 제출
	자기소개서	[별지2]서식에 의거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3]서식에 의거 제출
	자격증 사본	요양보호사 자격증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등본 미인정	공고일 이후발행, 주소변동 기재, 병역사항 포함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해당자	재직/경력증명서 (※부서, 직위 등 정보 포함해야 하며, 폐업으로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폐업한 근무처에 대해 기재된 사실증명(전국 세무서에서 근무사실 확인 후 발급 가능)을 대신 제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해당자(우대사항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가산점 확인)
최종 합격자 (합격일 이후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13자리 모두 표시) ■ 일반채용신체검사서 ■ 반명함 사진 1부(3*4cm)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기타 서류는 별도 안내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검사 결과로 채용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작성 시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노출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8. 최종합격자 결정 및 통지

가.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

구분	면접 평정요소	합격자 결정 기준	비고
공통 사항	① 공적 책무성,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성 부합 여부 ② 이해력 및 지식수준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인성 및 직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정요소별 모든 시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후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동점자 처리】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구분	면접 평정요소	합격자 결정 기준	비고
	⑤ 창의성 및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순위: 장애인 - 3순위: 사회적취업취약계층(①→③) - 4순위: 면접 평정요소 고득점 순 (①→②→③→④→⑤) <p>※ 면접전형 결과 시험위원 평균 점수 7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반영하고, 나머지는 절사</p> <p>※ 상기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시 장기요양 관련 사업 1년 이상 근무자 우선 합격 적용</p>	

나. 최종 합격자 통지

- 합격자발표: '23. 3. 7.(화)
 - 통지방법: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 임용예정일: '23. 3. 10.(금) 이후
- ※ 합격자발표이후 업무관련교육, 회의등 개최될 시 임용전이라도 참석 필수

9. 예비합격자제도 운영

□ 예비합격자 결정방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예비합격자 순번(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의 1배수이내)에 따라 추가 임용

10. 응시자 권리보호 제도안내

가.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접수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접수방법: “채용결과 이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서명

한 후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로 제출

-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답변 처리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나. 채용서류 반환

- 운영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청구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 접수방법: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서명한 후 사회서비스원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로 제출
- 반환방법: 입사지원서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비용은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 부담)

11. 기타사항

-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수시 확인 바랍니다.
- 나.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 서비스원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정보가림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 발견될 경우 전형별 단계에서 임의로 가림 처리 됩니다.
- 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 바.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가점 확인 및 자격 확인용 증빙자료를 제출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사. 채용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자. 최종합격자의 근무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임용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 가능하여야 합니다.
- 차. 임용예정일 이후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타. 채용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하. 그 밖에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064-762-855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는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정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